



협력과 장익을 바탕으로 꿈을 키우는 어린이  
**한들교육통신**

제 2024-19호

http://school.jbedu.kr/handeul ☎ 교무실 (063) 227-1851 ☎ 행정실 (063) 227-2650 담당 교무

## 출결 관리 안내장

안녕하십니까?

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. 2024학년도 '학생 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'에 의거하여 우리 학교 출결상황 관리에 대한 규정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1. 결석

결석의 종류는 출석인정결석, 질병결석, 미인정결석, 기타결석으로 구분되며, 학칙에 의거 출석해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는 결석으로 처리

#### 가. 출석인정 결석

##### 1) 출석인정 결석

순	결석사유	제출서류																	
1	천재지변, 법정 전염병 또는 전염성(독감,수두 등)이 인정되는 질병	• 질병명이 명시된 진단서나 의사소견서																	
2	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(20일 이내), 현장실습, 교환학습(학교 주관이 아닌 개인적으로 대회에 참여 할 경우는 해당 없음) ※학생선수 훈련 및 대회 참가시 교외체험학습 등으로 출석인정 처리 불가	• 학교 대표 경기 및 대회 참가공문 또는 확인서																	
3	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: 5px auto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대상</th> <th>일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결혼</td> <td>형제, 자매</td> <td>1</td> </tr> <tr> <td>입양</td> <td>학생본인</td> <td>20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4">사망</td> <td>부모 및 조부모, 외조부모</td> <td>5</td> </tr> <tr> <td>증조부모, 외증조부모</td> <td>3</td> </tr> <tr> <td>형제·자매 및 그의 배우자</td> <td rowspan="2">1</td> </tr> <tr> <td>부모의 형제·자매 및 그의 배우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대상	일수	결혼	형제, 자매	1	입양	학생본인	20	사망	부모 및 조부모, 외조부모	5	증조부모, 외증조부모	3	형제·자매 및 그의 배우자	1	부모의 형제·자매 및 그의 배우자	• 경조사 확인서류 (결혼-청첩장, 사망-장례확인서) ※ 휴무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며,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.
구분	대상	일수																	
결혼	형제, 자매	1																	
입양	학생본인	20																	
사망	부모 및 조부모, 외조부모	5																	
	증조부모, 외증조부모	3																	
	형제·자매 및 그의 배우자	1																	
	부모의 형제·자매 및 그의 배우자																		
4	건강장애, 병원 치료 기간 중에 병원학교 수업 참여 및 화상강의를 이수한 경우	• 병원학교, 화상강의 참여 증명서																	
5	학칙에 따라 학교장이 승인한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 포함) - 공휴일, 방학,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15일 이내에서 출석 인정 - 단,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'심각인 경우에 한해' '가정학습을 포함' - 교외체험학습은 반일(중식 전·후) 가능 (반일 2회시 1일로 환산) (단, 학교교육과정 운영상 오전 또는 오후 수업만 실시하는 경우에는 1일 단위로 신청함) - 가정 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	• 해당 3일전까지 신청서 제출→ 체험 후 보고서 제출(종료후 7일 이내) (문서 또는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제출) • 해외체험학습의 경우는 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제출																	

2) 코로나 19관련 등교중지의 경우 출석인정 [코로나19 4급 전환]

유형	등교중지 기간	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
확진자	[등교중지] 격리 해제 시까지 (권고 5일)	· 출석인정 : 격리 권고 기간(5일) ※ (기저질환자)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'심각경계' 유지 시 출석 인정 · 출결 증빙 대체자료 폐지 ※ 의료기관의 진단서(소견서) 등 제출 필요
유증상자	[등교중지]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	· 출석인정 : 학교장이 등교중지를 명령하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실시 후, 음성으로 판정된 경우 당일 출석인정 ·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(소견서) ※ 단, 의료기관에서 음성으로 판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 증상을 사유로 연속하여 결석하는 경우는 질병결석 처리함.

3) 코로나19 백신 접종외의 경우 출석인정

- 접종일은 출석인정결석,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~2일은 출석인정결석, 3일 이상은 질병결석 처리
- \*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. 예)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,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임
- \* 증빙자료-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

나. 질병결석

- 등교 후 결석계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
- 1~2일 질병 결석: **결석계+ 처방전, 투약봉지, 담임확인서 중 1가지**
- 3일 이상 질병 결석 : **결석계+ 의사소견서, 진료확인서, 진단서 중 1가지**

다. 미인정결석 - 결석계와 증빙서류 제출

-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
- 학원수강(예술·체육계포함)으로 인한 결석, 교외체험학습 인정 일수를 초과한 결석,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으로 인한 결석,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

라. 기타결석 - 결석계와 학부모 의견서 등 증빙서류 제출

- 부모·가족 봉양, 가사 조력,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
- 학부모가 직접 사유를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담임교사에게 등교 후 제출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경우

마. 지각, 조퇴, 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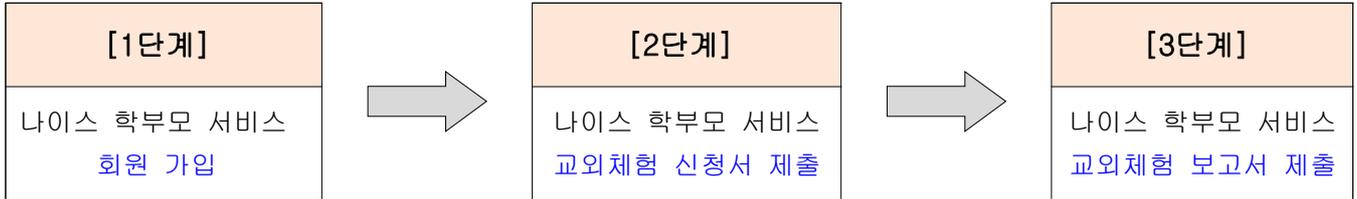
- 지각: 등교시각(09:00)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
- 조퇴: 하교시각(정규 수업시간) 이전에 하교한 경우
- 결과: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
- 지각, 조퇴,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, 미인정, 기타로 처리함
- 같은 날짜에 지각, 조퇴,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함.

- ※ 코로나19 관련 출결 안내는 변동 사항 발생 시 추후 안내.
- ※ 교외체험(가정학습)신청서 및 보고서는 **문서 또는 나이스 학부모서비스 중 택1 하여 제출**
- ※ 결석계, 교외체험(가정학습) 신청서, 보고서 양식 홈페이지 탑재
- ※ 교외체험(가정학습)신청서 및 보고서 **나이스 학부모서비스 가입 및 신청 방법 안내(다음장 참조)**

2024. 3. 13.

**전주한들초등학교장**

## ■ 나이스 학부모서비스 가입 및 교외체험학습 신청 방법 안내



[1단계]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**회원가입**



[2단계]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**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**

자녀의 교육활동 신청하기 ⇨ 교외체험학습 신청하기 (자녀지원-교육활동신청-교외체험학습신청서)

[3단계]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**교외체험 보고서 제출**

자녀의 교육활동 신청하기 ⇨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등록하기 (학교생활 지원-교육활동신청-교외체험학습보고서)

※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**붙임1, 붙임2의 매뉴얼을 참고**하시기 바랍니다.